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3. 13 선고 2018가단13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이한동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김준석, 이재영, 박종현, 박민건

**변론 종결**2020. 1. 17.

**판결 선고**2020. 3.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경 C 주식회사에 지입된 D 동양 4.5톤 냉동탑 트럭(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 위하여 생활광고지 교차로에 이 사건 지입차량과 운송물량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원고의 친구인 E이 피고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지입차량의 매매조건을 알아보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을 소개하여 주었다.

나. 1) 원고는 2018. 10. 14. 피고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하여 '넘버'(화물운송사업권)와 '일자리'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1억 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특정된 '일자리'는, 피고가 돼지고기 도축과 가공업무를 하는 농업법인 F 주식회사(아래에서는 'F'이라고 한다)와의 화물운송용역계약에 따라 F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이다.

2) 원고의 친구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운행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상행짐 : 김해 출발 김천 도착으로 1회 편도 운임(33만 원) 월 평균 22회~23회로 운행된다.

하행짐 : 김천 출발 부산 사하 도착으로 1회 편도 운임(15만 원) 월 평균 22~23회로 운행된다.

단, 김천 원청 회사의 물량조절로 인한 탄력적으로 타 지역으로도 운행할 수 있다.(예, 한달에 2~3번 나주 또는 부천으로 운행할 수 있다).

\*원청회사 대표님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한 운행방식 또한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매출증대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운행내용 중 '상행짐' 부분에 관하여 주 5일 근무이므로 월 평균 22~23회라고 기재된 부분은 사실에 맞지 않고, '하행짐' 부분에 관하여 하행짐은 원청회사인 F의 대표 재량이고 피고가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E은 '하행짐' 부분에 수기로 '사장님(F 대표) 재량으로 추가 짐 발주, 거의 본인만 충실하면 추가 짐 할 수 있음'이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12.과 10. 14.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 잔금으로 2018. 10. 17. 14,137,379원, 2018. 11. 1. 3,000만 원, 2018. 11. 6. 2,565,000원을 지급하였고,

대출원금 5,5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나머지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원고는 2018. 10. 29. 화물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18. 10. 말경부터 2018. 11. 말까지 F으로부터 17회의 상행짐 운송을 의뢰받아 실시하였고, 하행짐의 운송의뢰는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12. 피고에게 하행짐의 운송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E이 작성하여 온 부분에 대하여 '추가짐은 사장님 마음이라고, 피고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언급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F 사장에게 물량 부탁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8. 12. 2.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지입차량을 수령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8. 12. 5. 전화로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내용과 같이 상행짐과 하행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E이 작성하여 온 이 사건 계약서의 운행내용은 E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의 지적으로 수기로 '사장님 재량'이라고 기재하였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만 원고가 F으로부터 운송물량을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8. 12. 6. F 사장에게, 원고에게 운송일거리를 보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F 사장은 원고와 나주 운송 등을 협상하다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물량을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8. 12.경 부산 북부경찰서에 '피고가 F과의 운행물량이 거의 없음에도 운행물량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거래처 인수에 따른 권리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9. 6. 21. 검찰로부터 위 고소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입차량을 매도함에 있어 피고의 기망과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2. 20. G를 통하여 이 사건 지입차량을 3,7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지입차량 외에 '일거리'를 매매대상물로 삼는 계약으로서, 피고는 일거리에 관한 운행내용과 월 매출과 관하여 피고의 전 화물운송업자와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① '상행짐'이 월 22회 내지 23회 보장되지 않고, ② 월 22회 내지 23회 보장된다고 한 '하행짐'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③ 월 85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마치 운행내용과 월 매출이 위와 같이 보장되는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중 권리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권리금 상당의 63,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운행물량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약정한 내용 중 일거리 부분에 관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중 일거리 부분을 해제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일거리 부분에 관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63,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입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대기업 지육, 김해(11시)~H(15시) 현지 퇴근(추가 탕1) 원할 시 김천~부산양산김해 납품, 월 2~3회 나주 상차 있음) 월 매출 850~1천만 이상/경비 300만+50만 유보2) +추가 탕 200~300만/순수800만(개인)'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의 '운행내용'에 상행짐과 하행짐 모두 월 평균 22~23회, 타 지역으로의 운행에 따른 매출 증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의 인정사실 및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의 친구인 E이 피고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상행짐만 주 5일씩 한 달을 운송하는 경우 월 660만 원(33만 원×20회)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근무일 추가나 추가 운송이 있는 경우 월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지입차량의 운행 상황이나 운임, 운송물량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월 매출이나 운송건수에 관한 광고내용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약 중 '운행내용' 부분의 '하행짐'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원고의 친구인 E이 임의로 작성하여 온 '하행짐' 부분 문구에 대하여 피고의 지적으로 '사장님 재량으로 추가 짐 발주, 거의 본인만 충실하면 추가 짐 할 수 있음'이라고 추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하행짐'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월 22회 내지 23회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F 대표의 재량으로 운행 여부나 수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행짐'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입차량을 인수한 이후 한 달 동안 F의 '상행짐'을 17회 정도 운송하여 그 횟수가 이 사건 계약에서 운행내용에 기재된 한 달 22회 내지 23회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상행짐에 대하여도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월 22회 내지 23회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운송물량은 운송발주업체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지입차량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한 기간에는 축사 화재와 돼지 단가의 상승으로 일시적으로 F의 운송물량이 줄어든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운송물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운송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는 F 측에게 '원고에게 운송물량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원고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⑤ F의 대표는 원고에게 한 달 최소 운송횟수를 비롯한 계약내용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F의 대표도 원고에게 운송을 의뢰하지 않기에 이르게 된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두 달 전에 이 사건 지입차량의 전 지입차주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을 1억 5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1억 6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운행내용이나 월 매출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지입차량과 화물운송사업권, 이 사건 지입차량을

이용한 '일자리'로서 F과의 운송거래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과 화물운송사업권을 이전하였고, F과의 운송거래에 관한 지위도 이전하여 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계약 중 '일자리'에 관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지입차량, 화물운송사업권과 함께 일자리도 함께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급부에 상응하여 매매대금이 구분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지입차량과 화물운송사업권, 일거리는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에 있어 그 중 일부에 관한 계약만을 분리하여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판결 등 참조).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현의선

- 1) 탕은 운송건을 의미하는 은어
- 2) 유가보조금